

대학 공개강의 저작권 사례별 가이드라인

- I 서론
- II 저작물 이용 중 저작권 침해 사례 유형
- III 공개강의 자료에 관한 저작권법상 주요 이슈
- IV 공개강의 자료 등에 관한 저작권 계약 이슈
- V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 VI 공개강의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집필진

변용완(중앙대학교)

김홍래(춘천교육대학교)

연구 · 기획

장상현(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보배(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4년 대학 정보화 활성화 사업 연구
비로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 목 차 >

I. 서론	1
II. 저작물 이용 중 저작권 침해 사례 유형	2
1. 저작물 이용 유형별 관련 저작권	2
2. 저작물 이용 중 저작권 침해 주요 유형	2
III. 공개강의 자료에 관한 저작권법상 주요 이슈	5
1. 저작권 일반	5
2. 저작물 등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경우	9
IV. 공개강의 자료 등에 관한 저작권 계약 이슈	15
1. 콘텐츠를 수집 이용 시 관련 저작권 계약	15
2. 저작권 계약의 유형	15
3. 교수와 CTL이 탑재를 위한 계약	22
V.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23
1.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	23
2. 공공누리	25
3. 교육기부저작물(자유이용 교육정보 저작물)	27
VI. 공개강의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30
1. 저작물 이용시 저작권 체크 포인트	30
2. 사례별 저작권가이드라인	33

〈 표 차례 〉

<표 2. 1> DeSeCo 프로젝트 보고서2	6
---------------------------------	---

〈 그림 차례 〉

[그림 3.1] 저작권의 체계 및 설명	7
[그림 3.2] 공표된 저작물 인용 시 체크 사항	11
[그림 5.1] 다음(DAUM) 카페글 검색시 CCL 설정 검색	24
[그림 5.2] 공공누리 홈페이지 화면	27
[그림 5.2] 공유마당 사이트 화면	28
[그림 5.3] 콘텐츠 나눔 기업/기관 사이트	29

I. 서론

20년 전까지만 해도 강의실에서는 교재를 중심으로 유인물과 패도 같은 종이 자료가 주로 활용되었고, 시청각자료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정보기술(IT)의 발전에 따라 교육의 패러다임은 과거 산업사회에서 형성된 획일적, 표준화된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선택적,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전환되어 왔다. ICT활용 교육, 이러닝, U러닝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 활용 교육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등장과 발전으로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스마트 교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기술 활용 교육에 그 자리를 내어 주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교육을 위한 자료 검색과 제작이 수월해지면서 현재는 다양한 유형의 풍부한 콘텐츠가 교실에서 활용되고 있다. 콘텐츠 이용이 확대되면서 공유의 중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양질의 자료를 제작하여 공유하면 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자료의 제작에 활용되어 전반적인 교육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교수들이 저작권 문제로 교육 콘텐츠 제작과 공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조항 해석이 어렵고, 그 범위와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저작물 이용에 고민과 불만이 큰 실정이며 이는 교육활동 위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수업용으로 제작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개별 이용허락이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본 대학공개강의 저작권 사례별 가이드라인은 교수들이 대학에서 저작권 문제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활용하거나 공개강의(OCW)에 탑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교육 현장의 저작물 이용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저작권 문제 여부를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다.

II. 저작물 이용 중 저작권 침해 사례 유형

1. 저작물 이용 유형별 관련 저작권

이용 유형	내용	저작권 관련 부분
자료의 출처	인쇄물 CD/DVD 방송 인터넷	불법 획득되지 않은 것 공표된 자료일 것
저작물의 유형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편집저작물 2차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물의 형태에 따라 저작권의 적용 내용이 다르며,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음 부적절한 인용으로 인한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피하 고자 함
변형의 유무	편집 가공 재생산 저작인격권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이 있음 2차적 저작물의 배포는 원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 를 야기함
공유, 유통	온라인	교육포털(교수-학습지원센터, KOCW) 접근 범위가 고 려대상이 됨
활용행위	자료의 복제 자료의 공연 자료의 전송	저작물의 형태에 따라 활용 행위가 달라지며 이용 방 법 및 범위가 결정됨
이용의 양	전체분량 일부분	기본적으로 일부분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를 이용할 수 있음

2. 저작물 이용 중 저작권 침해 주요 유형

저작물 이용 중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
해가 우려되는 저작물 이용을 유형화하면 미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불법 저작물의 이
용, 이용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저작물 이용의 양이 과다한 경우, 저작물 이용이
시장대체효과를 가지는 경우, 사적 이용의 범주를 벗어난 저작물 이용 등이 있다.

가. 미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학교 교육 활동이나 수업 활동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을 인터넷으로부터 획득하는 경
우, 그 저작물의 출처나 공표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례들이 있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수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족 친지 또는 소수의 동호회원 등만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되었을 뿐 다른 곳에 공개된 적이 없는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나. 불법 저작물의 이용

교수들이 P2P(공유사이트), 웹 하드 등에서 타인이 불법적으로 올린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교육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다.

공유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교육목적 저작물 요건 외의 이용

교육을 위하여 활용되는 많은 자료들은 교육정보제공 관련 사이트나 검색을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데, 이 저작물들은 저작자에 대한 정보나 이용허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용허락 여부가 필요한 저작물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다.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수업 목적 외의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의 인용규정 및 공정이용의 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

교육과 관련 없는 학생들의 흥미 유발 및 강의안을 장식적으로 꾸미기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인용

공정한 인용은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교육목적에 이용되는 학습지, 프리젠테이션에 포함된 저작물, 교수간의 연수에 이용되는 교재 등에도 타인의 저작물이 인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에는 해당 자료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강의안 작성시 다음과 같은 출처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 어문저작물 : 저자명, 서적명, 발행연도, 페이지
- 웹페이지 : URL, 방문일시 등
- 방송 프로그램 : 제작자, 작품명, 방송일시 등

마. 이용의 범위를 넘은 사용

교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저작물은 ‘일부분’에 해당된다. 특정 저작물 전체를 요약하거나 영어 교재 전체를 제공, 여러 교재를 복제하여 제공하는 경우, 짧은 소설 전체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등 이용의 양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 서적의 본문이 전체 338면인데, 그 1/3 이상인 114면이 인용 분량에 해당한 경우,
- 단편소설을 전부 인용한 경우, 중·장편 소설의 상당한 분량을 인용한 경우(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소설 감상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들을 선정하여 수록하면서, 각 작품마다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의 주제, 줄거리, 단락, 플롯, 시점 등장인물과 인물의 묘사방법, 배경, 문학사적 의의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작품해설집을 출판한 사안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적법하지 않은 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바. 시장에 영향을 미침

대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특정 저작물을 다량으로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전송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출판된 서적을 대부분을 복사하여 책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 시중의 교재의 상당부분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경우 등은 시장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Ⅲ. 공개강의 자료에 관한 저작권법상 주요 이슈

1. 저작권 일반

가.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여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도모하여 양자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나.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이란 창작자에게 법률로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이다. 다시 말해, 저작권(Copyright)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저작물¹⁾)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됨과 동시에 발생한다. 어떠한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이나 표시(예를 들어, © 표시)가 필요 없다. 즉, 저작권이 발생하기 위하여 아무런 절차나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권리가 발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출원등록을 해야 하는 산업재산권과는 다르다.

저작권은 우선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과 구별된다. 지적재산권이 저작권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1) 저작물(著作物)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는데, 여기에는 문학 작품(시·소설·각본),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 미술품,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독창성이다. 독창성은 저작물의 범주에 따라 그 정도가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작가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다른 사람의 자료를 베끼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은 표현이 나온다면, 독창성이 인정 될 수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표현한 것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 판단의 문제로서 저작물이나 아니냐의 판단은 독창적인 표현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양과 표현 방법도 판단의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를 부정한다. 독창적인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든 사람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으로 얻어진 발명 등과 같이 물질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등록 상표, 특허 등이 해당한다. 반면, 저작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으로 얻어진 예술 등과 같이 정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문학작품, 음악, 미술 등이다.²⁾

다.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 등 인격을 보호해 주는 권리이다. 작품을 쓴 사람의 이름이 바뀌거나 작품의 내용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작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나 이전될 수 없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재산권처럼 양도가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은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있다. 또 후자에는 번역권, 편곡권, 변형권, 기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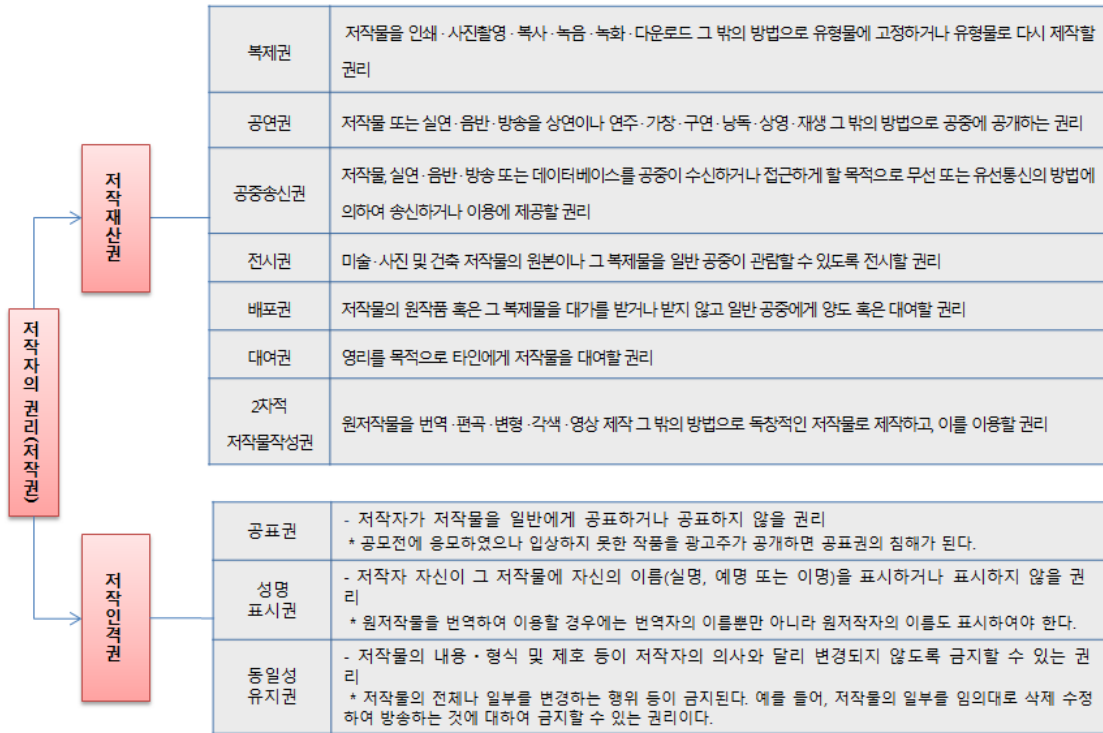
또한, 저작권에 이웃하는 권리라는 뜻에서 저작인접권이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

2)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차이점)

구분	저작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보호대상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물건, 방법 또는 물건의 생산 방법의 발명)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물품 및 글자체의 심미적 외관)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
권리발생 시기	창작의 완료 시	설정등록 시	설정등록 시	설정등록 시
보호기간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 까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 까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단 10년마다 갱신 가능

* 2011년 6월 30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거나, 저작물의 공표를 기준으로 하거나에 관계없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되었다.(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인정하는 권리이다.³⁾



[그림 3.1] 저작권의 체계 및 설명

3) ① 저작인접권자 :

- ▶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
- ▶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②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 ▶ 실연자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생실연)공연권, (생실연)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 공연보상청구권,
- ▶ 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 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 ▶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이처럼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된다. 또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때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라. 저작재산권의 제한(공정이용 규정)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동시에 공익목적 실현을 위하여 저작자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 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권 제한 사유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 3)

-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 ①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②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출처의 명기(제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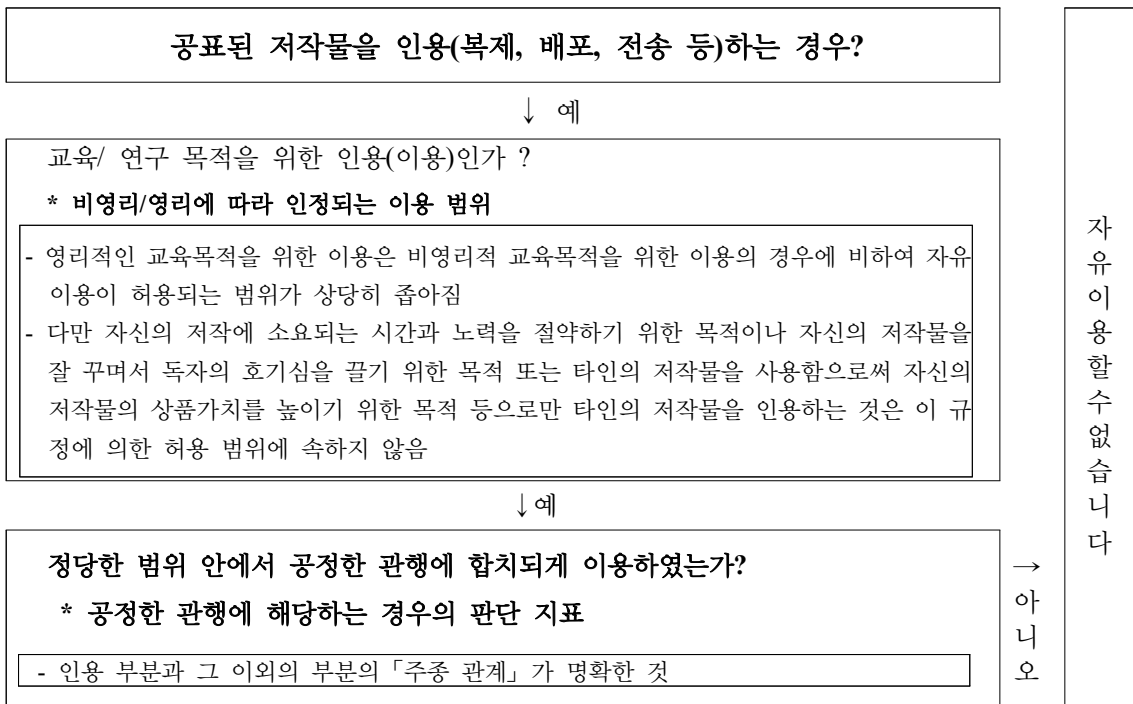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저작물 등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권리제한규정으로 불리고 있지만, 각각의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이 설정되어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 저작권법 제28조 인용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괄호 등에 의해 「인용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될 것
예 : 인용의 부분을 명료하게 표시하였는가(“ …… “, 들여쓰기, 폰트를 변경 등)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예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였는가?

*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할 것

출처 표시 예 :

- 어문저작물 : 저자명, 서적명, 발행연도, 페이지
- 웹페이지 : URL, 방문일시 등
- 방송 프로그램 : 제작자, 작품명, 방송일시 등

↓ 예(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허락을 얻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아주세요

인용이란 남의 말이나 글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타인의 말과 글을 이용하는 행위이다. 타인의 말과 글을 인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활동이므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이용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한다. 남의 말과 글 또는 견해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인용하는 부분의 시작과 끝을 반드시 밝히고 인용부호나 인용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

a.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것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b.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인용을 하는 필연성이 있을 것)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한’ 네 가지의 목적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도 포함될 수 있음.

-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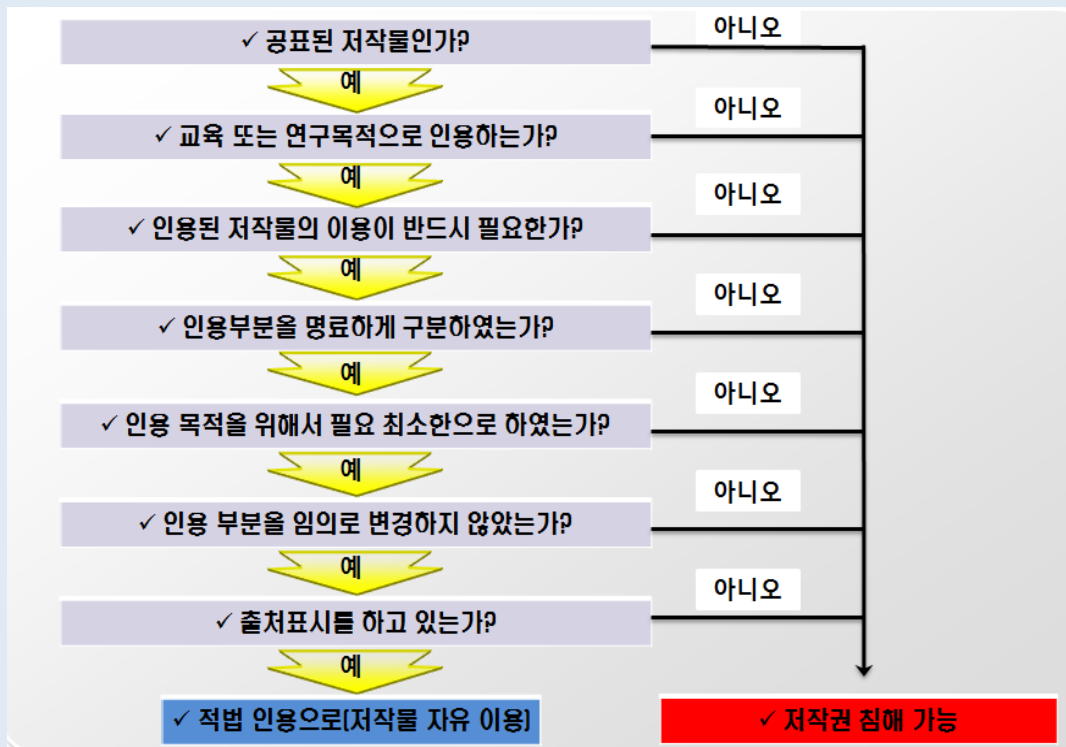
- 다만 자신의 저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나 자신의 저작물을 잘 꾸며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목적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규정에 의한 허용 범위에 속하지 않음

c.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것

- 인용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의 「주종 관계」가 명확한 것
 - 괄호 등에 의해 「인용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될 것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d 출처를 명시할 것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할 것



[그림 3.2] 공표된 저작물 인용 시 체크 사항

나. 저작권법 제35조의 3 공정한 이용 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012년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 합의에 따라 소위 ‘공정이용 일반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에 따라 소위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네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복제, 배포, 전송 등)하는 경우?

↓ 예

영리 또는 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이용 범위 결정?

* 비영리/영리, 변용적(생산적)이용 등에 따라 인정되는 이용 범위

- 비영리적 이용의 경우에 영리적인 이용에 비하여 공정이용 허용 범위가 상당히 넓음 (이 경우, 교육 또는 연구 등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넓어짐)
- 그리고, 그 이용이 생산적 이용(새로운 표현, 의미 등으로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더욱 높아짐
- 다만 자신의 저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나 자신의 저작물을 잘 꾸며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목적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한 허용 범위에 속하지 않음

↓ 예

자유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량/사용량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범위 결정?

*** 질적/양적 판단 지표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구체적 기준이 없음**

- 미국의 공정이용 분량적 제한 기준 :
- 한 해/학기 동안 한 저작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적 제한(학생과 교사들에게 적용됨)
 - 영화, 비디오, TV, DVD (영상 미디어) - 10% 또는 3분 이하(둘 중 더 적은 쪽으로 선택)
 - 시, 산문, 희곡 (텍스트) - 10% 또는 1000자 이하(둘 중 더 적은 쪽으로 선택)
 - 시인 한 사람 당 3개의 시 또는 여러 저자의 시선 집 중 5개 시 이하 - 시의 경우 250자 제한도 있음
 - 가사, 뮤직 비디오, 음악 녹음 - 한 작품에서 10% 그리고 30초 미만 - 뮤직 비디오의 오디오 파일도 포함 - 메인 멜로디는 유지되어야 함.
 -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이미지, 만화 - 한 멀티미디어에 포함된 저작자의 저작물 중 5편을 넘지 않아야 함 - 10% 또는 한 소스(책, 웹페이지, CD)에서 15편의 이미지를 넘지 않아야 함.
 - 숫자 데이터(스프레드 시트, 데이터베이스, 차트형태의 통계 자료) - 10% 또는 2500 필드 이하(둘 중 더 적은 쪽으로 선택)

→ 아 니 오

저작물 이용이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

***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
- 저작물의 이용 목적, 이용된 내용과 분량, 이용된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허 락 을 받 아 주 세 요

↓ 예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였는가?

***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할 것**

- 출처 표시 예 :
- 어문저작물 : 저자명, 서적명, 발행연도, 페이지
 - 웹페이지 : URL, 방문일시 등
 - 방송 프로그램 : 제작자, 작품명, 방송일시 등

↓ 예(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허락을 얻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① 이용이 영리적 목적을 가진 것인지 여부
- ② 이용이 사적(私的)인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③ 이용이 '생산적 이용'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④ 이용의 목적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⑤ 이용이 '부수적 이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⑥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 경위 등이 정당한지 여부 등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저작물의 성질이 창작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공정이용을 허용하는가의 문제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 전체에서 보았을 경우의 이용되는 양

[참고] 미국의 멀티미디어 공정이용 기준

(Fair Use Guidelines for Educational Multimedia, 1997)

- (1) 동영상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3분에서 짧은 것.
- (2) 어문 저작물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1,000단어 중 짧은 것. 시의 경우 1편의 시의 길이가 250어 이하의 경우는 전부 이용, 그러나 시인 1명에 대해 3개의 시까지 혹은, 다른 시인으로부터 완성되는 시집의 경우는, 1권의 시집으로부터 5개의 시까지. 250단어 이상의 시의 경우, 하나의 시로부터 250단어까지의 사용이 가능. 다만, 1명의 시인에 대해 3개의 시의 인용까지 혹은, 다른 시인으로부터 완성되는 시집의 경우는 1권의 시집으로부터 5개의 시의 인용까지 가능.
- (3) 음악, 가사, 음악 비디오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까지. 다만, 하나의 음악 저작물로부터 30초 이상 사용할 수 없다.
- (4)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 : 저작물 전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1명의 예술가의 작품의 사용은 5매를 한도로 한다. 결정된 작품집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이미지 합계의 수가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15매 중 적은 것.
- (5) 숫자 · 통계적 데이터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2,500필드(셀, 매스)중 적은 것.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의 이용이 원 저작물의 시장수요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IV. 공개강의 자료 등에 관한 저작권 계약 이슈

다음은 일반적으로 교수와 저작권자와의 계약, 교수와 CTL간의 계약 등에 있어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계약서는 현실에 맞추어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 형식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 입장을 취하면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저작물 이용허락 범위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교육 콘텐츠 이용 활성화, 효율성, 교육적 기여도 제고 및 후일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저작권의 관리에 필요한 계약관련 내용들을 안내해주기 위한 것이다.

1. 콘텐츠를 수집 이용 시 관련 저작권 계약

(1) 외주 제작을 위한 계약의 경우 :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가 된다. 따라서 다른 정함이 없다면, 자료를 개발한 교사 또는 연구자 등이 저작권자가 된다. 대학내 CTL((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이하, CTL))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자료를 개발한자에게 원칙적으로 부여된다. 그러므로 대학내 CTL이 개발된 자료의 저작권을 원하는 경우 또는 이용을 원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에 저작권 관련 문제들을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2) 교수가 저작물을 자율적으로 탑재하는 경우 : 교수가 저작물을 자율적으로 탑재한 경우 탑재된 저작물의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탑재된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및 저작권 이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명예, 퍼블리시티권)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작권 계약시 보증조항을 명시하여 한다.

2. 저작권 계약의 유형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저작권에 관한 계약(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저작권 계약은,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얻는 계약(이용 허락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를 받는 계약(저작권 양도 계약)의 2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용 허락의 경우, 이용자는 허락과 관련되는 이용 방법이나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범위를 넘는 이용은 할 수 없다.

한편, 저작권 양도의 경우는, 양수인이 저작권자가 되기 때문에, 양수인이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양도하면, 비록 저작자여도 양수인의 허락이 없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가. 외주 제작을 위한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가 된다. 따라서 다른 정함이 없다면, 자료를 창작한 교사 또는 연구자 등이 저작권자가 된다. 대학 CTL로부터 연구비를 제공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자료를 창작한자에게 원칙적으로 부여된다. 그러므로 대학 CTL이 개발된 자료의 저작권을 원하는 경우 또는 이용을 원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에 저작권 관련 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1)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체크 사항)

(1) 저작물의 작성을 위탁하여 보수를 지불했다고 해도, 저작권이 양도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제작 위탁의 경우는 수탁자측이 권리자가 된다. 사례금이나 보수를 지불하여 완성한 저작물의 납품을 받았다고 해도 저작물의 복제물이 양도된 것만으로 있어 저작권까지 양도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저작권의 양도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2) 저작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저작물의 이용이나 그 허락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양도인은 저작자여도 양수인의 허락이 없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저작권자가 되기 때문에 양수인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저작물을 이용 허락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또, 저작권을 재양도할 수도 있다. 반대로, 양도인은 양수인(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비록 저작자여도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 양도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양도인이 장래 일정한 이용이나 유사 작품의 창작을 예정하고 있다면 양도에 즈음하여 이러한 허락을 아울러 받아 두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3) 양도하는 저작권의 범위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양도 계약에서는 저작권의 어느 범위를 양도하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을 어디까지 세분화해 양도할 수 있을가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시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권법에 열거되어 있는 권리(이른바 ‘지분권’) 마다 는 양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무상 개별적인 권리로서 구별되어 취급되고 있는 경우(예를 들면, 음악의 저작물의 경우, 인쇄·출판할 권리, 녹음권, 영화 녹음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실무상 취급)는 독립하여 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실무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양도하는 기한부 양도도 실무상 행해지고 있다.

저작권법에는 ‘사용권’이나 ‘이용권’이라고 하는 이름의 권리는 없다. 양도 대상이 될 권리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가능한 한 저작권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권리(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저작물의 복제를 하는 경우 복제권, 저작물을 서버에 축적하여 전송하는 경우 복제권과 전송권 등이 관계된다. 저작권 일부의 양도에 대해서는, 관계할 권리가 무엇인가 잘 검토한 뒤에 계약을 하여야 한다.

(4)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지 명기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에 있어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양도의 목적으로 하여 특별히 명기되지 않을 때는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때문에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모든 저작권을 양도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기해 둘 필요가 있다.

(5) 규정 예 :

저작권자 및 양도인(이하 ‘甲’이라 한다)과 양수인 (이하 ‘乙’이라 한다).

제00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등) ① 갑이 수행한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는 을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재산권을 양도받는 저작물을 교육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이 아님을 보증하고, 이로 인한 분쟁으로 인하여 을이 손해 등을 입은 때에는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00조(저작권의 재양도) ① 을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00조(저작물의 반환)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을은 본 저작물 및 관련 자료를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저작물을 독점적/비독점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체크사항)

저작물의 이용 허락에는 독점적인 이용 허락과 비독점적인 이용 허락이 있다. 독점적 이용 허락이란 저작권자가 그 이용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할 의무를 지는 계약이며, 비독점적 이용 허락이란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않는 계약이다(특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통상 비독점적 이용 허락이 된다).

교육 목적 이용의 경우, 독점적 이용 허락으로 할 필요는 별로 없지만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의 판매 등을 예정해 다른 사람과 경합하고 싶지 않은 경우 등은 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을 맺는 일이 있다. 또, 독점적인 이용 허락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자신의 이용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그 취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1) 이용자는 허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허락 계약의 경우, 허락을 얻은 이용자는 허락과 관련되는 이용 방법이나 조건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는 이용은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저작물을 복제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은 것만으로는 홈페이지에 업 로드할 수 없고(홈페이지에 업 로드하는 것은 액세스가 있으면 공중송신 또는 전송에 대하여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 음악 저작물에 대한 연주의 허락을 얻은 것만으로는 연주를 녹음·녹화할 수 없다(녹음·녹화는 복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 허락이 필요).

(2) 이용 방법은 잘 생각하여 정해야 한다.

이용 방법의 규정 방식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예정하고 있는 이용 방법에 대해 구체적(한정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와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이 향후 어떻게 이용될지가 명확하여 권리자 측면에서는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을 얻지만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이용(계약에 기재되지 않았던 이용)에 대해서는 재차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다.

한편, 포괄적인 기재의 경우 광범위한 이용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액의 사용료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덧붙여 교육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이용에 비해 저렴한 사용료(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 허락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이용 방법을 한정(예를 들면, 복제의 경우 부수뿐만이 아니라 배포처 등도 해당 학교의 학생·교직원에게 무상 배포하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정적으로 기술하는 경우의 예】

제○조 (이용의 허락)

갑은, 을에 대해, 갑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 【 】 을, 을이 개발하는 교재 【 】 에 복제하여, 해당 교재를 이하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1) 학내용 서버에의 축적 · 송신
(축적 기간 : 【0년 0월 0일 0년 0월 0일】)
- (2) KOCW 서버에의 축적 · 송신
(축적 기간 : 【0년 0월 0일 0년 0월 0일】)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경우의 예】

제○조 (이용의 허락)

갑은, 을에 대해, 갑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 【 】 을, 이하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비영리의 교육 목적의 것에 한정한다.)을 허락한다.

- (1)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 (2) 방송, 그 외 본 저작물에 관한 모두의 이용(기술 등의 진보에 의해 장래 생길 수 있는 이용 형태를 포함한다)

덧붙여 예정하지 않았던 이용이 생겼을 경우는, 별도 협의하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기도 합니다(이러한 규정이 없어도, 협의하여 합의하면 이용은 가능하다.).

제○조 (협의)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이용 형태에 대해서는, 갑 을 별도 협의한 후, 이용의 가부(可否), 대가 등에 대해 결정되는 것으로 한다.

(3) 이용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제삼자에게 재허락하고 싶은 경우는 그 취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용 허락은 통상 계약 당사자인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허락을 받은 사람이 제삼자에 대해서 이용을 재허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용자가 제삼자에게 이용을 재허락하고 싶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취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허락을 인정하는 경우의 예】

을은 학교 그 외의 교육기관(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 00에 규정하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허락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은 필요에 따라서 규정이 필요하다.

일정기간 반복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쌍방으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게 계약기간(이용 가능 기간)을 규정하도록 한다. 덧붙여 전체의 계약기간은 규정하지 않고, 개개의 이용 방법 마다 이용 가능 기간을 규정하기도 한다. 또,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지만 계약의 해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을 정했을 경우, 기간 만료 때의 자동 갱신 조항을 삽입하는 일도 있다(자동 갱신 조항은 사용료가 인세 방식이나 연액 방식 등 계약기간의 연장에 의해 권리자에게도 메리트가 있는 경우에 많아, 무상의 경우나 일괄 지불 방식의 경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계약기간을 정하는 예】

제○조 (계약기간)

예1 본 계약의 기간은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로 한다.

예2 본 계약의 기간은 본 계약서 말미 기재의 본 계약 체결일부터 0년간으로 한다.

【자동 갱신 조항의 예】

계약의 기간 만료 0개월전까지 갑, 을 모두 상대방이 문서를 가지고 본 계약 종료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본 계약은 0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인격권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규정해 주세요.

저작자는 저작 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저작자 인격권에 대해서도 규정하여야 한다.

(6)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저작권 침해로 한 제삼자를 고소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용의 허락을 얻은 사람은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삼자가 저작권을 침해(저작권자에게 무단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했다)하여도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그 이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때문에 권리침해가 있었을 경우, 양자(저작권자와 이용 허락자)가 협력해 대처하는 취지의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물론, 이러한 규정이 없어도 협력하는 것은 가능하다.).

규정에
제〇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제삼자가 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갑, 을은 협력하여 이것에 대처하는 것으로 한다.

① 저작물을 독점적(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규정 예

제00조(저작물의 독점 허락) ① 을은 갑이 수행한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그 결과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영구적으로 / 연간) 독점적으로 혹은 (연간은 독점적으로 하되 그 이후부터는) 비독점적으로] (복제 / 전송 / 방송 등을)(선택 사항)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허락받은 이용권을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위탁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이용 허락받은 저작물을 교육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이용 허락한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이 아님을 보증하고, 이로 인한 분쟁으로 인하여 을이 손해 등을 입은 때에는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저작물을 비독점적(다른 사람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으로 이용하고자하는 규정 예

제00조(저작물의 단순 이용허락) ① 을은 갑이 수행한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그 결과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영구적으로 / 연간) (복제 / 전송 / 방송 등)(선택 사항)을 단순히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허락받은 저작물을 교육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갑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허락한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이 아님을 보증하고, 이로 인한 분쟁으로 인하여 을이 손해 등을 입은 때에는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교수와 CTL이 탑재를 위한 계약

교수 또는 제3자가 직접 강의자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 및 저작권 이외의 권리가 침해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제공된 정보가 제3자의 저작권 및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크게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탑재자 인적사항 및 확인서(동의서) 규정⁴⁾ 예

제00조(저작물 독점적 이용허락) 000(탑재자)는 000에 탑재하는 모든 저작물은 탑재자가 제작 또는 가공한 것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복제, 전송, 방송, 배포되는 것을 허락하며, 저작권을 탑재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00조(보증)

1. 탑재자는 000에 대해 본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 퍼블리시티권 그 외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2. 만일, 본 저작물에 관해서, 제3자로부터 권리의 주장, 이의, 불평, 대가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경우, 000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 아래 이것을 대처 및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000에 대해서 일절의 폐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제목을 붙이는데 명칭을 반드시 '계약서'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서', '각서', '합의각서', '확인서' 등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저작권재산권양도계약서'와 같이 계약내용을 반영하는 문구를 함께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V.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1.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

가. 이용허락표시 저작물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이용자에게 하는 이용허락은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성가신 일일 뿐더러 이용자 측에서도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와 접촉하여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일정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이용이 가능한 범위를 표시해놓은 저작물이다.

나. Creative Commons License(CCL)

Creative Commons License(CCL)은 가장 잘 알려진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로 저작권자의 자발적 공유로 창작물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여 창작물이 인류의 공동 자산이 되게 하자는 세계적인 운동이다. CCL은 권리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전제된 공유와 개방을 추구하고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화합을 도출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CCL은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실익이 매우 크다.

CCL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가치의 공유 및 확산과 저작자의 저작권보호와 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의 공통분모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이다. CCL은 이용자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두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으로서, 저작자는 저작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을 토대로 하여, 필요한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해 저작물에 표시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이용범위를 설정,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저작자표시는 모든 라이선스에 들어가는 사항이므로, 실제 운용되는 라이선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6종류이다.

<CCL 이용허락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 유형5>

라이선스	문자표기	내용
	CC BY	저작자 표시
	CC BY-NC	저작자 표시 - 비영리
	CC BY-ND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CC BY-SA	저작자 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ND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CCL의 주요 활용은 출판, 인터넷 검색 서비스, 플랫폼 등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 검색에서 CCL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Daum) 카페 검색에서 "카페 글"을 선택하면 CCL을 선택할 수 있고, 네이버(Naver)에서 이미지를 검색할 때, CCL 조건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다.⁶⁾



[그림 5.1] 다음(DAUM) 카페글 검색시 CCL 설정 검색



5) CC라이선스 구성요소(<http://www.cckorea.org/xe/?mid=elements>(2012년12월 방문))

6)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cckorea.org/xe/?mid=mashup> 참조.

2. 공공누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⁷⁾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이 뛰어나 민간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문화·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공공저작물⁸⁾의 이용허락 절차 부재 및 저작권 권리처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민간 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인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를 개발⁹⁾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¹⁰⁾

<공공누리 마크>

기본마크	이용허락조건 마크		
	출처표시(기본조건)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출처표시</p>	 <p>상업적이용금지</p>	 <p>변경금지</p>

- 7)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17>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말한다.
- 9) 공공누리 제도의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22조.
- 10) 공공누리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 및 활용계획(2012.02)을 참조하였다.

공공누리에서의 이용허락의 유형 표시는 4가지 조건별 이용허락 표시를 활용한다. 출처표시의무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공공기관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 의무의 선택적 부과 가능성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i)출처표시 ii)출처표시-변경금지 iii)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iv)출처표시-변경금지-상업적 이용금지, 4가지 조건별로 이용허락을 하고 있다.

<공공누리 유형 및 내용>

이용허락 유형	공공누리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기관은 공공누리 이용허락 표시(마크)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저작물의 제호 또는 끝 부분 등 적절한 위치에 공공누리 심벌마크를 표시하고, 심벌마크의 크기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누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누리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을 통하여, 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모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11) 현재에는 제한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1)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누리 적용 확대를 위해 공공누리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공공기관 실무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및 활용현황 모니터링, 모범기관 및 사례 선정·발표, 공공기관 성과평가 등 평가지표로 반영 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 및 활용계획, 201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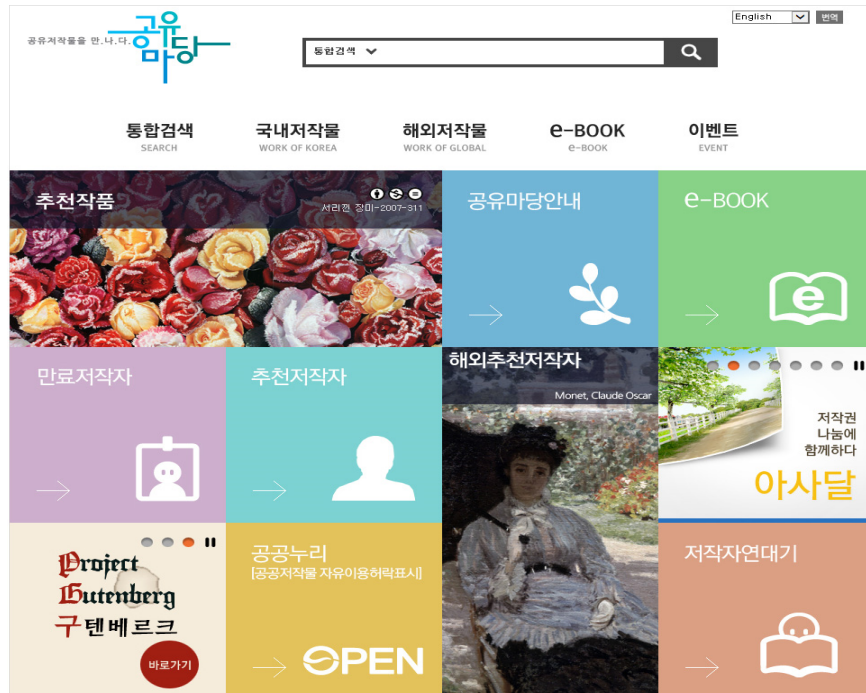
[그림 5.2] 공공누리 홈페이지 화면

3. 교육기부저작물(자유이용 교육정보 저작물)

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 저작물(Public Domain)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유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유마당(<http://gongu.copyright.or.kr/index.do>)’을 2012년 11월 19일 오픈했다. 동 사이트는 기존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자유이용사이트를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공유마당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만료·기증저작물뿐만 아니라 한국미술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수집된 현대미술작품과 저명한 사진작가들이 제공한 기록 사진 등을 자유이용허락(CCL)을 표시하여 제공했으며 11개 공공기관의 정보도 연계했다. 올해 새롭게 서비스하는 e-Book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문학 단편집 200편과 미술작품 400편을 엮어 제공하며 조건 없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림 5.2] 공유마당 사이트 화면

나. 교육기부 저작물

교육기부란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대학·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기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¹²⁾

- 프로그램 운영
 -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전문·관심 분야에 대한 강의·실습·체험
- 개인 재능
 - 문·예·체육교육, 진로 등 멘토링, 강연, 자원봉사
- 시설·기자재 기부
 - 악기 실험기자재, 체육기구(공, 시설 등), 미술작품 등을 임대, 무상 제공
- 활동 지원
 - 체험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등에 필요한 차량, 보험, 시설, 멘토링 인력 제공
- 콘텐츠 제공
 - 영화·뮤지컬·음악·미술작품 기관보유 정보 등을 전체 또는 클립 형태로 제공

12) 교육기부사이트(<http://www.teachforkorea.go.kr/donation.do?todo=intro>).



[그림 5.3] 콘텐츠 나눔 기업/기관 사이트

특히, 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주로 교육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수집·제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교육정보망(에듀넷 및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에듀넷(EDUNET)과 대학공개강의(KOCW) 홈페이지에서 기관과 기업의 기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¹³⁾

13) <http://www.edunet.net/redu/main/mainForm.do#> (2014년 10월 방문)

VI. 공개강의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이 장에서는 대학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저작물 이용 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의 영역,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누어 저작물 이용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사례는 강의 기획 단계, 강의 작성 단계(매체별(어문, 영상, 이미지 등)사례), 강의 공개 단계 구분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타인의 저작물 이용시 저작권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겠다.

1. 저작물 이용시 저작권 체크 포인트

가. <공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인가?

* 공표된 자료일 것

- 어떤 저작물이 공표되었는지 아니면 미공표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은,
- “공표”의 예
 - 출판사가 펴내어 서점에 나와 있거나 과거에 서점 등을 통해 유통된 적이 있는 책들이나 음반으로 제작되어 매장에 나온 것, 혹은 대여점에 나온 것 등
 - 온라인상의 저작물 유통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일반인이 검색하여 접근할 수 있게 인터넷 상에 올려져 있는 저작물의 경우
 - 특정 블로그, 카페 등의 회원들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공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인간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회원수가 다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 인트라넷 등에 올린 경우
- “미공표”의 예
 - 개인이 작성하여 아직 출판하지 않은 미공개 원고나 일기, 편지 등을 개인적으로 입수한 것일 경우
 - 가족 친지 또는 소수의 동호회원 등만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에 올려 졌을 뿐 다른 곳에 공개된 적이 없는 저작물인 경우

* 저작물에 해당할 것(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이용가능)

- 법령, 판결 등 공공저작물
헌법, 법률, 조약 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누구나 이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용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저작권법상의 권리침해행위로 보지 않는다.
-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
이용하려고 하는 저작물, 실연, 레코드, 방송 또는 유선 방송의 보호 기간이 종료하고 있는 경우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서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무료로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자유이용 저작물'이라고 한다. 저작권 만료 저작물의 이용 허락 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http://freuse.copyright.or.kr/index.do>))

(참고)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연장(50년에서 70년으로 통일)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원칙 :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영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공동저작물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나. <이용허락> 이용허락을 사전에 받았는가?

- *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미리 표시한 경우(CCL, 이용허락표시제도)에 이용 조건에 맞게 이용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발적 공유의 표시방식(CCL)을 통해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저작물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 그 표시 조건에 맞도록 이용하면, 권리침해행위로 보지 않는다.
- * 기부 저작물
기부 저작물은 에듀넷(<http://www.edunet.net>)을 통해 전국 교사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기부 저작물은 그 기부 조건에 따라 이용하거나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 <이용 목적> 교육연구 목적에 해당하는가?

- 교육/연구 목적의 경우 : 생산적 이용에 해당되는지가 중요 표지가 됨
- * 교육/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 비영리적 이용의 경우에 영리적인 이용에 비하여 공정이용 허용 범위가 상당히 넓음(이 경우, 교육 또는 연구 등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넓어짐)
 - 그 이용이 생산적 이용(새로운 표현, 의미 등으로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더욱 높아짐
 - 다만, 자신의 저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나 자신의 저작물을 잘 꾸며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목적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한 허용 범위에 속하지 않음

라. <이용 범위> 이용의 양과 범위가 적정한가?

- 수업·수업지원의 경우 : 일부분, 예외적인 경우 전부 이용 가능
- 교육/연구 목적의 경우 : 공정한 관행 및 정당한 범위 또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요성을 가지고 판단
 - 우리나라는 일부분/정당한 범위/ 비중 등에 관한 정량적(분량적)인 기준이 없음

<미국의 서적/멀티미디어에 관한 이용 기준>
(Fair Use Guidelines for Educational Multimedia, 1997)

- 영화, 비디오, TV, DVD (영상 미디어) - 10% 또는 3 분 이하(둘 중 더 적은 쪽으로 선택)
- 시, 산문, 희곡 (텍스트) - 10% 또는 1000자 이하(둘 중 더 적은 쪽으로 선택)
 - 시인 한 사람 당 3개의 시 또는 여러 저자의 시선 집 중 5개 시 이하
 - 시의 경우 250자 제한도 있음
- 가사, 뮤직 비디오, 음악 녹음 - 한 작품에서 10% 그리고 30초 미만 - 뮤직 비디오의 오디오 파일도 포함 - 메인 멜로디는 유지되어야 함.
-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이미지, 만화 - 한 멀티미디어에 포함된 저작자의 저작물 중 5편을 넘지 않아야 함 - 10% 또는 한 소스(책, 웹페이지, CD)에서 15편의 이미지를 넘지 않아야 함.
- 숫자 데이터(스프레드 시트, 데이터베이스, 차트형태의 통계 자료) - 10% 또는 2500필드 이하(둘 중 더 적은 쪽으로 선택)

※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된 미국의 공정이용(우리나라 저작권법(제35조의3))은 위 기준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미국의 기준에 부합되면 공정이용(적법한 인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적이고 교육적인 부분들이 주된 목적이 된다면 위 기준은 조금 더 넓혀질 수 있다.

2. 사례별 저작권가이드라인

구분	저작물 이용 형태	이용 사례	해당 영역	공정이용의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 필요
강의 기획 단계	수업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OCW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교육목적이므로 다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	(1) 교육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타인 저작물의 일부 내용을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요약하되, 그 원문 취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됨 (3)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강의 제작시	시, 산문, 희곡, 텍스트	영어 관련 강의에서 다른 교재에 나온 영어 예문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그 교재의 출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	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	(1) 교육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타인 저작물의 일부 내용을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요약하되, 그 원문 취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됨 (3)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교수가 외국어로 된 외국 서적이거나 외국자료를 번역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할 때 활용한 경우에도 저작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	(1) 발췌된 부분이 인용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인용된 부분이 구분될 수 있는 표시와 출처를 표시해주어야 함 (2) 번역 내지 내용을 요약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원문의 취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됨	
		신문기사와 같은 언론 보도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문사의 허락 없이 신문 기사를 이용하여 강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나요?	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	(1) 신문기사 중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논설이나 사실 등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기사는 인용의 요건에 맞게 이용하여야 함 (2) 신문기사의 홈페이지 게시 등은 링크를 이용하거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부분만 인용하는 등 기사 작성자의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p>정부에서 발간하는 책의 자료를 인용하여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p>	<p>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p>	<p>(1) 공공기관 및 정부에서 공개한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의 경우도 다른 저작물과 똑같이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됨 (2) 다만, 공공기관 및 정부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누구든지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인용하에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음.</p>	
	<p>‘서양문화의 이해’ 강의 초기 화면에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뮤직비디오 장면 중 극히 일부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삽입하여 넣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서양문화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강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나요?</p>	<p>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p>	<p>방송 프로그램의 및 뮤직비디오 등의 극히 일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극히 일부분의 인용에 해당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함. 이 경우에 출처를 명시해야함.</p>	
<p>가사, 뮤직 비디오, 음악 녹음</p>	<p>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가지고 무용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베토벤은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 판매용 음악 CD를 구입하여 강의를 제작하여 KOCW를 통해 공개된다면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p>	<p>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p>	<p>(1)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하고, 그 후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베토벤, 바흐 등의 작품은 이미 저작권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함. (2) 다만, 어떤 악단이나 연주자가 연주한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음반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판매용 CD를 구입하여 강의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공정 이용의 원칙 내에서 일부분만을 이용하여야 함.</p>	
	<p>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도입 부나 엔딩 부분에 배경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p>	<p>이용 허락이 필요</p>		<p>(1) 교육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다만, 극히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음.</p>

	노래를 통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인용에 해당될 경우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노래 재생의 경우 최소 몇 마디까지는 허용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은 없나요?	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	(1) 우리나라에서는 일부분의 인용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음. 다만, 미국의 <공정이용 기준 이용량(Quantities)>에 따르면, 음악, 가사, 음악 비디오의 경우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까지. 다만, 하나의 음악 저작물로부터 30초 이상 사용할 수 없음. (2)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된 미국의 공정이용(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위 기준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위 기준에 부합되면 공정이용(적법한 인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음.
	건축사를 설명하는 강의에서 고대 서양 건축양식에 대한 그림을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그림이나 교재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	(1) 사진 또는 이미지, 그림의 성질상 일부분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이용할 수 있음. (2)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디자인 강의에서 몇몇 예로 들 수 있는데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나 해당 상품 회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	(1) 사진 또는 이미지, 그림의 성질상 일부분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이용할 수 있음. (2)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이미지, 만화	서양미술 강의를 진행하는데 몇몇 화가의 그림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작가나 또는 그 유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	(1) 사진 또는 이미지, 그림의 성질상 일부분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이용할 수 있음. (2)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책 표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에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	(1) 사진 또는 이미지, 그림의 성질상 일부분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이용할 수 있음. (2)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오래된 명화나 사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	자유롭게 이용	(1)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하고, 그 후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반 고흐, 베토벤, 바흐 등의 작품은 이미 저작권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함. (2) 명화를 기계적으로 충실하게 재현하는 데 그친 사진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책에

			서 스캔하여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
	인터넷에서 수집된 이미지나 사진을 수정·가공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되나요?	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	(1) 교육목적상 어떠한 사실에 대한 설명, 예시를 위해서 이미지나 사진을 수정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다만, 출처가 불분명한 불법 자료 등은 사용하여서는 안 됨 (3)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도에 관련 강의에서 도자기 작품의 사진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사 또는 사진이 실린 출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	(1) 사진 또는 이미지, 그림의 성질상 일부분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이용할 수 있음. (2)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3)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공정이용 기준 이용량(Quantities)>에 따르면,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전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는 어렵지만 1명의 예술가의 작품의 사용은 5매를 한도로 하며, 결정된 작품집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이미지 합계의 수가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15매 중 적은 쪽을 택하여 활용할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됨 (4)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된 미국의 공정이용(우리나라 저작권법(제35조의3))은 위 기준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위 기준에 부합되면 공정이용(적법한 인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교과서의 그림 등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강의 콘텐츠를 KOCW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교과서 출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또한 설명을 위해 교재의 내용을 편집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 어느 정도 편집해서 사용하면 될까요?	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	(1) 사진 또는 이미지, 그림의 성질상 일부분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이용할 수 있음. (2)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3)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공정이용 기준 이용량(Quantities)>에 따르면,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전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는 어렵지만 1명의 예술가의 작품의 사용은 5매를 한도로 하며, 결정된 작품집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이미지 합계의 수가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15매 중 적은 쪽을 택하여 활용할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됨

			(4)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된 미국의 공정이용(우리나라 저작권법(제35조의3))은 위 기준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위 기준에 부합되면 공정이용(적법한 인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신체 부위 등을 설명하는 강의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사진을 이용하여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는지요?	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	(1) 해당 선수에 대한 비평이나 경기에 대한 리뷰 등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적인 이용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함 (2)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외부에 오픈하는 교양강의 콘텐츠에세계에서 일어난 신기한 사건이나 재미있는 사진들이 담겨있는 신문기사들을 그대로 모아 약간의 코멘트만을 곁들이며 제작하려고 한다면 신문사나 잡지사 등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	(1) 사진 또는 이미지, 그림의 성질상 일부분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이용할 수 있음. (2)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3)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공정이용 기준 이용량(Quantities)>에 따르면,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전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는 어렵지만 1명의 예술가의 작품의 사용은 5매를 한도로 한다. 결정된 작품집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이미지 합계의 수가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15매 중 적은 것을 선택한 경우는 공정이용에 해당됨. (4)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된 미국의 공정이용(우리나라 저작권법(제35조의3))은 위 기준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위 기준에 부합되면 공정이용(적법한 인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음	
도표, 그래프	국영방송의 재정비율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 논문에서 사용된 표를 보면 국영방송의 실태를 바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미디어 관련 수업 강의노트에 이 표를 그대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그 논문저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	(1)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2)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공정이용 기준 이용량(Quantities)>에 따르면, 숫자 · 통계적 데이터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2, 500필드(셀, 매스)중 적은 것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됨.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많은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	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1)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2)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공정이용 기준 이용량(Quantities)>	

	<p>도표와 그래프를 만든 사람이나 자료가 나와 있는 출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p>	<p>자유롭게 이용)</p>	<p>에 따르면, 숫자 · 통계적 데이터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2, 500필드(셀, 매스)중 적은 것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됨</p>	
영화, 비디오, TV, DVD (영상 미디어)	<p>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유튜브 등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경우 동영상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작권이 문제된다면 합법적으로 링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p>	<p>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p>	<p>(1) YouTube에 게시된 동영상은 가능한 URL 링크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링크(단순, 직접, 인라인 링크 등)를 거는 경우 우리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전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 제작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링크를 걸 수 있음.</p>	
	<p>광고 또는 홍보학 관련 강의나 외국 문화 관련 강의에서 광고 동영상을 이용하여 수업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경우 광고회사 또는 담당 제품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p>	<p>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p>	<p>(1)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2)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공정이용 기준 이용량(Quantities)>에 따르면, 동영상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3분에서 짧은 것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됨.</p>	
	<p>강의에 필요하여 다른 곳에서 동영상을 비롯한 다른 자료들을 가져와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출처 표시를 해야 하나요?</p>	<p>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p>	<p>(1)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2) 출처표시 방법은 일반적인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p>	
기타	<p>외국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강의 내용에 적합한 다큐멘터리 방송 중 극히 일부를 강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KOCW에 탑재할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p>	<p>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p>	<p>(1)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함. (2)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공정이용 기준 이용량(Quantities)>에 따르면, 동영상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3분에서 짧은 것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됨.</p>	
	<p>학생들의 지루함을 달래고 강의에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강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하여 강의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p>	<p>이용허락 필요</p>		<p>(1) 교육과 관련 없는 흥미 유발을 위한 기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의 활용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음.</p>

		<p>외국문화 또는 언어 강의에서 영화 전체를 보여주며 언어표현을 설명해준다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나요?</p>	<p>이용허락 필요</p>		<p>(1) 교육목적의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영화 전체를 보여주는 경우는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2)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함. (3)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공정이용 기준 이용량(Quantities)>에 따르면, 동영상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3분에서 짧은 것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됨.</p>
		<p>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상업용 영상 자료의 일부를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p>	<p>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p>	<p>(1) 인용하거나 이용된 부분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2)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공정이용 기준 이용량(Quantities)>에 따르면, 동영상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3분에서 짧은 것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됨.</p>	
		<p>외국 원서를 교재로 하여 진행하는 강의를 가지고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 KOCW에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 원서의 경우 교재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해당 출판사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판사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얻지 않고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강의 자료를 제작하거나 이것을 보강하여 제작한 후 공개하여도 무방한가요?</p>	<p>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p>	<p>(1) 출판사에서 제공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자료 이용범위가 일반적으로 표시되고 있음. 출판사가 제시한 이용 범위 내(예시 : 비영리적, 교육목적으로 본 파워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음) 이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음. (2) 이용범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활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일부분의 이용만 할 수 있음.</p>	

	<p>요즘 대학에서는 발표·토론 수업이 활발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공개강의에서 학생 영상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촬영하여 KOCW 등 외부에 공개할 경우, 별도로 얼굴이 나오는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p>	<p>이용허락 필요</p>		<p>(1) 동영상에 학생들의 초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일반적으로, 수업 서두에 이에 대한 공지를 하여 구두로 양해를 구하는 방식 또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 방식이 있음.</p>
	<p>본인이 만든 책을 교재로 사용하여 강의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책은 1년 전 출판되어 이미 출판사와 계약을 통해 출판권을 양도한 상태입니다. 즉 교재의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하면서 계약으로 교재를 이용한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권한을 출판사에서 갖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제작한다면 출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p>	<p>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p>	<p>(1) 저작권 양도 계약의 경우 명시적으로 “제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규정을 하지 않았다면, 출판사의 허락 없이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제작할 수 있음. (2) 일반적으로 저작권 양도계약은 저작권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여야 함.</p>	
	<p>사전에 출판사로부터 사용허락을 받고 교재에 게재된 문헌, 사진 및 이미지를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p>	<p>자유롭게 이용</p>		
	<p>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물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p>	<p>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p>	<p>(1)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도 고성능 디지털 사진기나 동영상 카메라로 전문가에 못지않은 영상물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박물관이나 사진관에서 사전 허락 없이 촬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 이와 같이 관행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저작권법은 수업/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물을 촬영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p>	

	<p>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p>	<p>자유롭게 이용</p>	<p>수업/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으므로 촬영이 허락된 공연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공연을 촬영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p>	
	<p>교수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제작한 자료(글, 사진, 그림,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들을 모아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요?</p>	<p>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p>	<p>(1) 학생들이 제작한 저작물은 출처가 불분명한 불법 자료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함. (2) 학생들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적법하게 인용할 수 있음.</p>	
	<p>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해당 강의 콘텐츠 안에 명시해야 하나요?</p>	<p>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p>	<p>(1) 출처표시 위반되는 저작권 침해죄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2) 출처표시 방법은 일반적인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p>	
<p>강의를 온라인에 탑재 (학교 OCW 또는 홈페이지)</p>	<p>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 와 같은 표시가 붙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료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p>	<p>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p>	<p>(1) 표시는 이용 허락표시(CCL)로서 해당되는 이용 허락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2) CCL은 이용자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두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으로서, 저작자는 저작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을 토대로 하여, 필요한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해 저작물에 표시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이용범위를 설정,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음.</p>	
	<p>강의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학생들의 과제도 공개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요?</p>	<p>공정 이용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p>	<p>(1) 학생들이 제작한 저작물은 출처가 불분명한 불법 자료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함. (2) 학생들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적법하게 인용할 수 있음.</p>	

		<p>교수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부 내용을 조교나 제삼자에게 맡겨 개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가요?</p>	<p>이용허락 필요</p>		<p>(1) 저작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위탁계약시(조교나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당한 고액이라는 점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탁계약에 의한 결과물의 저작자는 직접 창작행위를 한 자가 될 것이며, 위탁자는 계약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만을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위탁계약에 있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나 저작권이 위탁자에게 이전되는지의 여부 등을 계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두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음.</p>
--	--	--	----------------	--	--

참고문헌

- 김홍래, 변용완,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연구(연구보고 CR 2012-16), 2012.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오승중, 저작권법, 박영사(2009)
-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07)
- 이형하, 저작권법상의 자유이용, 재판자료(제57집), 법원도서관
- 임원선(책임집필),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006)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저작권법 해설(2009.8)
- 신봉섭, 미국의 교수 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교수신문(2001.3.19)
- 곽창순, “대학의 저작권 활성화 방안 : 현황 진단과 정책 제안”, (<http://kautm.net/칼럼방>).
- KOCW : <http://www.kocw.net/home/introduce/intro1.do>
- http://www.snu.ac.kr/about/ab0401_rule.jsp?top_reg_id=41&mid_reg_id=129&search_top=41&search_mid=129(서울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http://www.ewha.ac.kr>
- 연세대학교 : <http://www2.yonsei.ac.kr/rule/rulemain.asp>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Giving Knowledge for Free THE EMERGENCE OF OPEN EDUCATIONAL RESOURCES, 2007(CERI)
- Wiley, D. (2006), "On the Sustainability of Open Educational Resource Initiatives in Higher Education", available at: www.oecd.org/edu/oer.
- Carson, S. (2006), "2005 Program Evaluation Findings Report - MIT OpenCourseWare", 5 June.
- Lerman, S. and S. Miyagawa (2002), "Open Course Ware -A Case Study in Institutional Decision Making" Academe, Vol. 88(5), September/October, available at: www.aaup.org/publications/Academe/2002/02so/02soler.htm
- Wiley, D. (2006), "On the Sustainability of Open Educational Resource Initiatives in Higher Education" available at: www.oecd.org/edu/oer.
- MIT OCW : <http://ocw.mit.edu/about/our-history/>
- MIT : <http://www.mit.edu/afs/athena/org/t/tlo/www/guide.toc.html>(Guide to the Ownership, Distribution and commercial Development of M.I.T. Technology)
- MIT OCW : <http://www.bb.ustc.edu.cn/ocw/OcwWeb/HowTo/content-mit-approach.htm>

Harvard : <http://www.techtransfer.harvard.edu/PatentPolicy.html>(Copyright Policy)

Stanford : <http://www.stanford.edu/dept/DoR/rph/5-2.html#Sec1>(Copyright Policy)

岸本 織江, 教育用コンテンツ開発にあたって利用する既存の素材の著作物性, 独立行政法人メディア教育開発センター(平成20年(2008年)2月).

加戸守行, 「著作権法 逐條講義」4版, 社団法人 著作権情報センター(2003年)

川原 健司, 引用の適法要件, 東京大学法科大学院ローレビュー(最新号(第2巻), 2007年9月).

上野達弘, 「引用をめぐる要件論の再構成」(著作権法と民法の現代的課題), 半田正夫先生古稀記念(法学書院, 2003年).

立命館大学, 大学におけるデジタルコンテンツの知的財産権管理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大学知的財産本部整備事業」21世紀型産学官連携手法の構築に係るモデルプログラム研(平成16年(2004年)).

文化庁「自由利用マーク」: www.bunka.go.jp/jiyuriyo

JOCW : <http://www.jocw.jp/>

Ritsumei : http://www.ritsumei.jp/research/c04_02_j.html

Kyoto OCW : <http://ocw.kyoto-u.ac.jp/jp/copyright/copyright09.htm>.

대학 공개강의 저작권 사례별 가이드라인

발행	2015년 1월
발행인	임 승 빈
발행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keris.or.kr)
주소	☎701-310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351) 전화: 053)714-0114 팩스: 053)714-0198
등록 인쇄처	제22-1584호(1999년 7월 3일) 기쁨D&P 전화: (053) 964-2101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비매품>

- * 대학공개강의서비스(KOCW) : <http://www.kocw.net>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 <http://www.riss.kr>
- *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 <http://www.rinfo.kr>